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단1058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20. 11. 13.

판결 선고 2021. 1. 2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924,302원 및 그 중 6,000,755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8. 10. 2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2. 1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2016. 5. 10.에는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는 피고 B이 신용카드대금채무(대출금채무 포함)를 연체하자, 2019. 8. 12.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미변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은 2020. 1. 23.기준 합계 10,924,302원이고, 그 중 원금은 6,000,755원(= 신용카드대금 2,162,885원 +대출금 3,837,870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23.7%이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2004. 4. 1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 F(법정상속분 각 1/3)이 망 E(이하 '망인'이라한다)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8.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10. 25. 2004. 4.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피고 C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G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10,924,302원 및 그 중 원금6,005,755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대출금포함)은 그 성립의 기초가 이미 발생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은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망인의 H은행 대출금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는데, 이러한 피고C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피고 C이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조미옥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중구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및공동작업장

지하층 497.777㎡ 공동작업장, 1층 961.117㎡

2층 내지 15층 각 935.31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중구 [] 대 11455㎡

2. 대구광역시 중구 [] 대 2294㎡

3. 대구광역시 중구 [] 대 40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3.0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1455분의 11.598

2 소유권대지권 2294분의 2.148

3 소유권대지권 4059분의 3.700 ㎡.